

의안번호	2204766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5. 2. 24.
추계번호	24A443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	○ 정부는 제17조제5항제13호의4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상인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	안 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)	○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5항) － 13의4.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						
1	안 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개정안의 화재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의 상인 수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정부의 지원금액이 화재공제료의 일부이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－ 참고로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						
2	안 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5예산</td></tr> <tr> <td>중소벤처기업부</td><td>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(전통시장 화재공제)</td><td>2,000백만원</td></tr> 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5예산	중소벤처기업부	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(전통시장 화재공제)	2,000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5예산						
중소벤처기업부	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(전통시장 화재공제)	2,000백만원				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을 수행하고, 동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상인에 대하여 정부가 화재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면 추가재정소

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사업(“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(전통시장 화재공제)”)을 수행하고 있음
 - 동 사업은 “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용을 지원”하는 것으로, 2025년 예산은 화재공제시스템 운영, 홍보 및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의 화재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(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)의 상인 수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정부의 지원금액이 화재공제료의 일부이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의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을 포괄함
 - 상점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¹⁾에 따른 상점가를 말하며, 상권활성화구역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²⁾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
- 참고로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현행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2024년 9월 기준 가입점포 수는 56,038건임

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상점가”란 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.

2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상권활성화구역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가. 시장·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

다.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

라.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

[표 1]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현황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.9.
가입점포수(건)	26,921	35,865	46,778	52,916	56,038
가입률(%)	14.8	19.7	25.7	30.3	32.0
누적 지급금(백만원)	894	1,280	1,980	2,584	4,611
누적 적립금* (백만원)	4,710	7,305	10,601	13,869	15,475

주: *총 공제기금에서 누적 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(금융기관 예치)

자료: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」, 2025. 2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